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0. 11.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구미시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제외항목의 “축제”와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포함)의 경우”를 삭제한다.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호 중 “축제”를 삭제하고, 제3호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포함)의 경우”를 삭제한다

3. 참고사항

- 「관광진흥법」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축제”와 제3호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포함)의 경우”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제외).....
1.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1.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생략)	2. (생략)
3.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포함)의 경우	3. <삭 제>
4.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원안 제4호와 같음)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 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해당 업소 소개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기타 홍보물품 지원 등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관광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